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사무총사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법률사무에 종사할 전문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종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전문연구원	3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조사총괄과 - 조사1과 - 데이터안전정책과	채용일로부터 1년 ('24.5. ~ '25.5.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총사기관이므로, 변호사자격 취득 후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법률사무총사기간으로 인정됨

※ 근무부서는 근무경력 및 부서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기관이 결정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채용 후 부서간 전보 가능

□ 담당업무

채용직종	담당업무
전문연구원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지원 ○ 개인정보보호 제도 관련 법률지원 ○ 소관분야 관련 법령 검토 및 해석 ○ 소관분야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업무 ○ 소관분야 관련 민원대응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응시 자격

□ 응시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최종시험 예정일('24.2.7.)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법학석사 또는 법학전문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4.4.22.) 기준

채용 우대 사항
1.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법학박사 또는 법학전문박사 학위 소지자 3. 개인정보보호 또는 법률사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우대요건 기본 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4.4.22.)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학박사 또는 법학전문박사를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예시1)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제출한 자
: 법학석사 학위를 응시요건, 법학박사 학위를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2) 법학박사 학위만 제출한 자 : 법학박사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인정

□ **증빙서류 제출**

○ 변호사 자격증, 학위 및 경력은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만 인정

* 1) - 졸업증명서 사본(학교정보는 평가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으며, 기피·제척사유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됨) 2) 자격증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 3) 경력증명서 - 이 상세히 표시된 경력증명서 제출(필요시 업무분장표, 계약서, 조직도 등 보충자료 제출가능)
--

우대요건 고려사항
○ 경력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경력 제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근로자(전문연구원)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24. 5월 ~ '25. 5월(예정)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 ~ 18:00)

라. 보 수 : 월 2,793,500원(통상임금)

※ 정액급식비 및 명절수당 균등 지급분 포함, 초과근무수당 별도

※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은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공제함

마. 후생복지 : 복리후생비·교육비·건강검진비 등 일부 지원, 청사헬스장 무료이용 등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대상자는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 일터 공고 예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 (응시자 수 3배수 이하 시) 응시요건

(응시자 수 3배수 초과 시) 응시요건,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관련지식에 대한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국가기관 직원으로서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함.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4.4.12.(금) ~ 4.22.(월)	
원서접수	'24.4.12.(금) ~ 4.2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우편 접수 : castnoshadow@korea.kr ※ 메일제목 : “전문연구원 응시원서(성명 000)” 로 제출 ※ 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4.29.(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공고
면접심사	'24.5.3.(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4.5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6. 제출서류

《필수 제출》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5)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별지 제5호 서식】
- 6) 법학석사 또는 법학전문석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7)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선택 사항》(서류전형 우대요건 사항)

- 변호사 자격 증빙서류 1부
- 법학박사 또는 법학전문박사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필요시 보충자료 추가 가능)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별지 1~5번의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 제출할 서류 전체를 순서에 맞게 준비한 후 전체 제출 서식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나라 일터 및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가함이 명백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00-3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연구원 채용 응시원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전문연구원	생년 월일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나. 응시자격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학위		전공(학과)	학위수여기관
학위 (응시요건))석사	'00.00.00.	법학	OO대학교
	예시)전문석사	'00.00.00.	법학	OO대학교
자격증 (우대요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발급기관	
	예시)변호사	'00.00.00.	법무부	
학위 (우대요건)	학위	학위취득일	전공(학과)	학위수여기관
경력 (우대요건)	경력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부서
	예시)○○기업	'00.00.00.~ '00.00.00.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인)

- ※ 1) 필요에 따라 행을 늘려 작성 가능 (단, 응시원서는 1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
2) 응시요건 외 사항은 필수 제출 사항이 아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본 공고문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1. 응시번호 : 작성하지 않음 ※ 서류전형 실시 전까지 응시번호 발송 예정
2. 성명,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필수요건(학위)

1. 학위 : 학위기재
2. 학위취득일 : 학위취득일 기재
3. 전공(학과) : 학위 취득한 전공(학과) 기재

다. 우대요건(자격증)

1. 자격증명 : 자격증명 기재
2. 자격증 취득일 : 자격증 취득일 기재
3. 발급기관 : 자격증 발급기관 기재

라. 우대요건(학위)

1. 학위 : 학위기재
2. 학위취득일 : 학위취득일 기재
3. 전공(학과) : 학위 취득한 전공(학과) 기재

마. 우대요건(경력)

1. 경력 : 소속 기관(또는 기업) 기재
2. 근무기간 : 근무기간 기재
3. 담당업무 :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4. 근무부서 : 재직 시 소속부서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전문연구원

▣ 성 명 :

1.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해당업무 수행에서의 마음가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지원동기는 반드시 포함

2. 작성 시 **학교,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3. 반드시 A4 2페이지 이내 작성(**2페이지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2024. . .

작성자 ○ ○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연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이 제출한 증명서 등 각종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응시분야
	전문연구원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